



## 부 록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장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정안
第14條(管理監督者 등) ①事業主는 당해事業場의 管理監督者經營組織에서 生産과 관련되는 당해 業務와 所屬職員을 직접 指揮·監督하는 部署의 長이나 그 職位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職務와 관련된 安全·保健上の 業務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危險防止가 특히 필요한 作業에 있어서는 당해 作業의 管理監督者를 安全擔當者로 지정하여 安全業務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14條(관리감독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管理監督者가 수행하여야 할 安全·保健에 관한 業務內容, 安全擔當者를 지정하여야 할 作業의 종류, 安全擔當者가 수행하여야 할 安全業務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제15조 제1항 각호 (현행과 같음)
第15條(安全管理者 등) ①事業主는 第13條第1項 各號의 사항 중 安全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第15條(安全管理자 등) ①----- 제13조 제1항 각호----- ----- 관리감독자 ----- -----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⑤安全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 · 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u>(신설)</u></p>	<p>제15조의3(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16條(保健管理者 등) ①事業主는 第13條第1項 各號의 사항중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 · 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한다.</p>	<p>제16條(保健管理者 등) ①————— 제13조제1항 각 호————— 관리감독자—————</p>
<p>②(생략)</p> <p>③第1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15條의2의 规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p>
<p>第16條의2(安全管理者 등의 指導 · 助言) 第15條의 规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16條의 规定에 의한 保健管理者가 第13條第1項 各號의 사항중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에게 建議하거나 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에게 指導 · 助言하는 경우에는 事業主 · 管理責任者 · 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p>	<p>第16條의2(安全管理者 등의 指導 · 助言)————— 제13조제1항 각호————— 관리감독자—————</p>
<p>第19條(産業安全保健委員會) ①事業主는 第13條第1項 各號의 사항 등을 審議 또는 議決하기 위하여 勤勞者 · 使用者同數로 구성되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人 미만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의 경우에 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관한法律에 의한 勞使協議會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勞使協議會가 설치되어 있는 事業場에 있어서는 당해 勞使協議會를 이 法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로 본다.</p>	<p>第19條(産業安全保健委員會) ①—————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p> <p>—————. 〈단서 삭제〉—————</p>

현행	개정안
<p>②事業主는 다음 각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의 數·資格·職務·權限 등에 관한 사항</p> <p>③ ~ ⑦ (생 략)</p> <p>第28條(有害作業 都給禁止)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第29條 (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保健措置) ①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와 그의 受給인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②———— 각호————</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第28條(有害作業 都給禁止)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p> <p>————</p> <p>————</p> <p>————</p> <p>———— 각 호 —————</p> <p>————</p> <p>————</p> <p>1.————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第30條(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計上 등) ① ~ ③ (생 략)</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 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者가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機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p> <p>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및指導業務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⑥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專門機關”으로 본다.</p> <p>第32條(管理責任者 등에 대한 教育) ① 다음 각號의 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p>

현행	개정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_____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업의 事業主 · 管理監督者 및 安全擔當者	4. _____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條(有害 · 危險機械 · 器具 등의 防護措置 등) ① · ② (생 략)	제33條(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등의 防護措置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_____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신 설〉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 · 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 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⑩제4항 _____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_____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_____

현행	개정안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신 설〉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⑧ 제2항
第35條의2(防護裝置 製造事業 등의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設計·施工하는 者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5條의2(防護裝置 製造事業 등의 지원) ①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설계·시공하는 자
③ · ④ (생 략)	②
第36條(自體検査) ① ~ ③ (생 략)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検査의 方法·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第36條(自體検査) ① ~ ③ (현행과 같음)
第37條(製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製造·輸入·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

현행	개정안
<p>讓渡·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研究를 위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p> <p>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p> <p>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第38條(製造 등의 허가) ①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38條(製造 등의 허가)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p> <hr/> <hr/> <hr/> <hr/> <hr/>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p>	<p>⑤ 각 호의 어느 하나</p> <hr/> <hr/> <hr/> <hr/> <hr/>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p>	<p>〈삭제〉</p>
<p>⑥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p>
<p>第41條(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 등) ①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輸入·사용·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號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p>	<p>第41條(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 등) ①</p> <hr/> <hr/> <hr/> <hr/> <hr/> <p>각 호의 사항 모두를</p> <hr/> <hr/> <hr/> <hr/>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p>

현행	개정안
<p>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lt;신 설&gt;</p>	<p>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려하지 아니하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u>⑧</u>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⑨ (현행 제7항과 같음)</p>
<p>第42條(作業環境測定 등) ① ~ ⑥ (생 략)</p>	<p>第42條(作業環境測定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lt;후단신설&gt;</p>	<p>⑧—————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⑧ (생 략)</p> <p>第43條(健康診斷)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p>	<p>⑨ (현행 제8항과 같음)</p> <p>第43條(健康診斷) 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현행	개정안
사 · 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_____ _____ 건강진단기관 _____ _____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事業主는 第19條의 规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는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⑥_____ _____ 건강진단기관 _____ _____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 · 시기 · 주기 · 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 · 치과의사의자격 · 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 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통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_____ _____ 항목 · 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 관리 _____ 제4항 _____ _____
〈신 설〉	_____
⑨第15條의2의 规定은 제3항의 规定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⑨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 ·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 · 교육의 방법 ·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第49條(安全 · 保健診斷등) ① ~ ③ (생 략)	⑩_____ 건강진단 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_____
④第15條의2의 规定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安全 · 保健診斷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安全 · 保健診斷機關”으로 본다.	_____
第51條(監督上の 措置) ①勤勞基準法 第104條의 规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事業場 또는 第52條의4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의 事務所에 出入하여 관계자에게 質問을 하	_____
第49條(安全 · 保健診斷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_____
④_____	_____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 · 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第51條(監督上の 措置) ①「근로기준법」_____	_____
다음 각 호의 장소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p>條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정지의 기준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p> <p>第65條(權限의 委託) 勞動部長官은 이 法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委託할 수 있다.</p>	<p>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8조제4항 · 제34조의5 · 제35조의2제3항 · 제37조제3항 ·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제4호의2 · 제5호 ·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li> <li>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li> <li>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 보건평가</li> <li>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li> <li>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li> <li>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사 ·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li> <li>7.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li> <li>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li> <li>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li> <li>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li> <li>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 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 · 교육에 관한 업무</li> <li>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 · 교육에 관한 업무</li> <li>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li> <li>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li> <li>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li> <li>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 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li> <li>17.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p>제66조의2(별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 설〉</p>	

현행	개정안
<p>第71條(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71條(양벌규정) —————— ————— ————— 제66조의2 —————— ————— —————</p>
<p>第72條(過怠料)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li> </ol>	<p>第72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제41조제5항, —————— —————</li> </ol>
<p>3. ~ 4. (생 략)</p> <p>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11條第1項, 第2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의 妥지, 安全保健管理規程, 物質安全保健資料를 비치 · 게시하지 아니한 者</li> </ol>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과 같음)</p>
<p>2. ~ 4. (생 략)</p> <p>〈신 설〉</p> <p>③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 (생 략)</li> <li>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 제공하지 아니한 자</li> </ol>	<p>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시향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 (현행과 같음)</li> <li>7.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 —————— —————</li> </ol>
<p>8. ~ 12.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⑦ (생 략)</p>	<p>8. ~ 12.(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p>